

VI. 보험상품 정의 및 분류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1. 금융상품의 법률체계 개선

금융상품의 정의 문제는 규제측면에서 규제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금융상품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분류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과 역사적으로 취급해 온 개별금융회사별 유사기능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잣대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상품을 정의하여 일반소비자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규제법률에서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 범위의 확정을 위해서 행정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류와 해석이 어렵거나 중첩성이 있는 분야는 공동 취급영역으로 하거나 금융회사별 취급방식만 달리하는 유사금융상품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영역의 업무에 대한 겸업의 허용이나 상품정의에도 불구하고 특별규정으로 제한된 상품 또는 업무를 특별히 허용하는 등 금융상품 정의에 대한 보완 또는 보충적 체계도 필요하다.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의 포괄적 금융투자상품 정의와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열거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는 그 자체만으로는 포괄적 정의로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적 범위를 알려주고 그에 해당하는 규제대상 범위를 자세히 나열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유도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 및 은행법과 비교하면 보험상품과 은행상품의 영역은 기관중심 실질적 감독주의하에서는 보험회사 또는 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이해하고 열거된 구체적 해당금융상품만으로 해석을 한다고 볼 때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본다. 향후 열거되지 않는 신상품개발에서 중첩성이 있는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우선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사례에서는 2006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2002년 홍콩과 2001년 싱가포르의 증권선물개혁법 등이 있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도 당초 투자서비스법으로 출발할 때에는 투자성보험과 은행상품을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최종 제정법률에서는 보험과 은행상품을 배제하고 해당법률에서 금융상품거래법의 일부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홍콩 및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에 대한 통합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험은 적용배제되었다.

과거 영국의 금융서비스법은 부분통합금융법으로 적용대상을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장기보험계약, 그리고 집합투자 등 ‘투자성’이 강한 ‘투자상품’ 혹은 ‘자본시장상품’으로 정의하여 생명보험의 투자성상품을 포함한 바 있으나, 규제상품 구분의 문제, 규제원칙의 불균등성 문제 및 업무영역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 때문에 2000년 완전금융통합법 체계로 전환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완전통합금융법률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환되는 경우 규제차익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완전통합금융법률 체계로 전환되기 전에는 금융투자상품을 규정하는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보험과 은행을 배제하고, 해당법률에서 투자성상품에 대한 필요규제를 자본시장통합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분류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에도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포괄적 정의 개념을 보험업법에 신설하고 현행 취급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구체적 보험상품을 자세히 열거하는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이 한정적 열거주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대상 여부 및 금융상품 분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적 해석이 불가한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이전에 규제당국의 균형있는 해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분류를 관장하는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인 규제체계가 될 것이다.

보험산업 내에서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유사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업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적용배제조항을 일괄 삭제한 후 보험업법에 적정한 규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국내 보험법체계는 보험업법에 보험계약법도 포함하는 체계이고 보험업법이 상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법률체계면에서는 보험업법에

서 보험상품의 정의를 상법의 보험계약의 정의 또는 보험자의 책임의 내용과 달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을 정하기 위한 보험상품의 정의가 보험상거래를 규정하는 상법상 보험계약의 정의와 같아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보험업법에서 타당한 이유없이 상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다. 다만, 상법은 보험업법에 비하여 법개정이 비탄력적인 관계로 급변하는 보험시장의 변화와 보험상품의 변화를 즉시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상품의 정의에 대한 검토를 계기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보험업법에서 일관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상법의 보험계약법의 상당부분을 보험업법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상법상 서비스급부 등 기타의 급부를 상해보험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이 서비스 급부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개정하거나 보험업법에서 보험정책 및 감독측면에서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률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뿐 아니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도 서비스 급부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보험계약법 개정을 위하여 보험의 의의와 생명보험계약의 현물급부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¹⁰⁸⁾.

생명보험계약의 현물급부 허용은 개호서비스의 제공, 노인홈타운의 입주권 급부 등의 현실적 허용 필요성에 따라 검토하고 있으며, 서비스급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것, ② 보험금상당의 것, ③ 보험금수취와 선택가능한 것, ④ 범용성 및 대체성이 있는 것, ⑤ 가격변동리스크의 파악이 가능한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논점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에 보험상품의 정의를 신설할 때에 서비스급부를 폭 넓게 허용할 경우 보험계약법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서비스급부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계약자보호측면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108) 金融廳, 「保険法改正への 對應について(主要論点の 検討①)」, 平成19年11月22日.

2.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 신설

보험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신설하는 목적은 자본시장통합법에서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의 취지 및 목적과 다르지 않다. 열거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이 출현하더라도 투자성 개념을 기준으로 규제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규제공백을 제거하여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한 이유이다.

이런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보험규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의 열거주의 하에서는 열거되지 않은 보험신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보험상품인지에 대하여 규제당국에 사전적 유권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험규제의 대상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자 하는 최근의 노력은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의가 시도하였다¹⁰⁹⁾. 보험회사의 업무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부수업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보험법상 보험의 고유업무를 “보험의 인수·운영”으로 정의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취급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개혁위원회의 방안은 그 당시의 시대적 현실과 보고서 목적에는 부합하였지만 이미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개념적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좀 더 진전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보험의 인수·운영’에서 보험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대상 규정과 동일수준의 대응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볼 때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험상품을 직접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험규제 대상을 협소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이나 급부반대 급부균등의 원칙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기적 보험상품은 보험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광의로 정의하는 경우 품질보증

109) 금융개혁위원회, 『금융개혁 1차 보고서(종합본)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1997. 4., p. 17 및 p.351.

거래 또는 투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파생상품까지 보험상품이 되어 다른 산업 또는 금융업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한 책임준비금의 적립 등을 강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보험상품을 정의하는 방법도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즉, 보험회사가 현재 고유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의하는 것이 최선이나, 그리 쉬운 것이 아님은 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보험을 정의하는 최근의 추세는 리스크 전가(transfer of risk)를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Keeton & Widiss(1988)가 주장했듯이 리스크를 전가하는 모든 계약이 보험도 아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취급하는 모든 보험상품이 포괄적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가장 대표적인 요건을 중심으로 보험을 정의하고 보험회사가 현실적으로 취급하고 있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보험상품은 보험정의에 상관없이 보험상품으로 추가 열거하거나 보험정의에 속하더라도 보험고유의 상품이라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겸업화 된 금융시장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우선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방식은 핵심적 특성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후 미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부연 설명을 추가하는 부연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미국의 경우 보험계약의 포괄적 정의에 '우연한 사고'와 '보증계약'에 대하여 추가 설명적 규정을 하고 있다.

<표 IV-1> 미국 뉴욕주의 보험계약 포괄적 정의

근 거	내 용
보험계약의 포괄적정의 규정 및 관련 추가규정 (제110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이란, 보험사(insurer)인 일방의 당사자가 피보험자(insured) 또는 보험수익자(beneficiary)인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우발적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a material interest which will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happening of such event)를 그 사고 발생기 가지거나 가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고 발생을 조건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급부(benefit of pecuniary value)를 부여하는 의무를 지는 합의 또는 그 밖의 거래를 말한다. - 우발적 사고(fortuitous event)는, 양 당사자의 지배의 범위를 완전히 또는 상당히 벗어난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그렇다고 양사자가 인정한 발생 또는 비발생을 의미한다. - 보증계약(contract of warranty, guaranty or suretyship)이란, 보험사업을 본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보증인(warranty, guaranty or surety)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본다.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를 위한 핵심적 기능에 대해서는 상법상 보험계약의 정의에 부합하면서 최소한의 핵심요소를 기준으로 정의함으로써 취급 보험상품의 현상을 폭 넓게 반영할 수 있다. 미국 정부회계기구(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보고서¹¹⁰⁾가 제시하는 보험계약의 핵심 요소는 위험전가와 위험분산이다. 피보험자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위험을 다른 주체에게 이전하거나 보험회사가 큰 보험집단을 구성하여 위험을 분산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학술적 정의도 위험이전 특성에 집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포괄적 정의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위험이전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는 ‘위험이전’ 요소만을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안(제1안)과 투기적 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손해보상성 개념을 포함하는 방안(제2안)을 제안한다. 규정형식은 2가지 방안 모두 상법상의 보험계

110) GAO, 「Definition of Insurance and Related Information」, February 23, 2006.

약을 참고하면서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험상품 소비자의 ‘권리’로 규정할 수 있다.

< 제 1 안 > - 위험이전 요소만 반영

“보험상품이란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수수할 권리를 말한다.”

< 제 2 안 > - 위험이전 요소에 손해보상성 개념을 포함

“보험상품이란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그 사고시점에서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불리한 이해관계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수수할 권리를 말한다.”

<제1안>은 폭넓은 개념으로 보험상품을 정의함에 따라 연금 및 파생상품 등을 포괄하고 있어 보험상품의 영역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논란영역도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세부보험상품을 통해 현행 상법과 같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제3보험에 대하여 보험가입의 목적 또는 손해보상성 요건 등을 추가할 수 있어 기존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고, 보험상품 정의의 명시적 포함 또는 제외 조항을 통하여 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영역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안>의 경우 국제적 사례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상법상 보험계약의 범위보다 보험상품의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있고, ‘불리한 이해관계’의 해석에 대한 논란도 우려된다.

따라서 <제1안>이 금융경업화 추세를 반영하고 국제적 금융상품 분류 또는 보험상품 분류체계에도 적합한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 방안이라고 본다.

“불확정한 사고”에 대한 부연규정은 미국의 ‘우연한 사고’와 동일한 개념의 현행 상법상 용어로서 양 당사자중 일방의 지배를 벗어나서 발생했거나 발생했으리라고 추측되는 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써 객관적 우연성이 아니라 주관적 우연성을 의미함을 분명히 할 수 있으므로 추가 규정이

필요하다.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의 범위에는 금전급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보상금액과 물품 및 서비스 등 기타의 급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추가 규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서는 세부 보험종류를 정의하면서 상해보험에 한하여 기타의 급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한 물품 및 서비스 등의 기타의 급부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보증’기능은 다른 금융기관 뿐 아니라 일반기업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기능면에서 보험성을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만, 다른 보증과 구분되는 요소를 기준으로 거래방식의 보험거래이고 보증주체가 보험회사인 것을 보증보험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열거대상 보험상품의 확대 및 연금관련 규정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을 열거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는 전통적 보험상품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확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중첩성 금융상품에 대한 판단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열거하고 있는 세부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가 없어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열거하는 보험상품에 정의도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의 내용을 참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연금상품 취급현황을 보면 생명보험회사 뿐 아니라 손해보험회사 및 다른 금융기관들도 취급하는 기간확정형연금에 해당하는 세제적격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있고 생명보험상품의 하나로서 연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가지 연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기준으로 보면 상법상 보험계약의 정의는 ‘불확정한 사고 발생시 일정한 보험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손해보상성은 언급되지 않았고,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을 생명보험업의 취급상품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어 추가 규정의 필요성

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포괄적 보험상품의 정의가 신설되면 연금이 포괄적 정의에의 포함여부에 따라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첫째, 만약 보험상품 정의안 중 <제1안>과 같이 신설하게 된다면 사람의 생존시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정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존여부에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기간연금 또는 사망시에도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상품은 보험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예금 또는 투자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생존여부에 상관없는 확정기간연금과 세제적격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 영위로 포함한다는 보완적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보험상품 정의안 중 <제2안>과 같이 신설하게 되면 연금은 손해보상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험상품 정의에 포함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보험상품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상품(사망을 또는 생존율과 무관한 기간확정연금 포함)을 모두 포괄하는 연금상품의 정의와 함께 명시적 열거 보험상품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세제적격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취급도 보험업의 영위로 규정하여 보험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금을 정의할 때 일정기간의 정기적 지급(periodical payment)을 하는 모든 계약 또는 인명의 존속에 따라 일련의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어떤 금액을 지급하거나 계속 지급하는 계약을 모두 포함하고 포괄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으로 열거함으로써 연금취급이 보험업 영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열거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현행 보험업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보험상품은 <표VI-2>과 같이 일반적인 전통적 보험상품 분류에 따라 열거하고 있으나, 최근 보험상품 정의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었던 신용보험, 날씨보험, 법률서비스보험 등은 열거하지 않아 한정적 열거주의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VI-2> 현행 보험업법령에 열거된 보험상품 현황

구 분	보험상품	해당상품 내용	비 고
생명보험업	생명보험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연금 보험(퇴직 보험 포함)을 제외한 보험	생명보험회사만 취급
	연금보험	노후 또는 퇴직후의 생활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퇴직시 일정액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보험	
	기타생명보험	그 밖에 하부규정에서 정하는 보험	
손해보험업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손해보험회사만 취급
	해상보험 (항공·운송보험 포함)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항공기·육상운송물·인공위성 등에 관하여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항공·운송보험은 보험종목 구분시 해상보험으로 본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것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보증보험	매매·고용·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재보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 기타의 급여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보험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기술보험	기계설비 및 장치, 전자기기,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 이와 유사한 목적물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구 분	보험상품	해당상품 내용	비 고
손해보험업	부동산 권리보험	부동산에 대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손해보험회사만 취급
	도난보험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유리보험	유리가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동물보험	동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원자력보험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비용보험	상금, 상품, 소송비용, 기타비용을 발생시키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기타 손해보험	그 밖에 하부규정에서 정하는 보험	
제3보험업	상해보험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생명·손해보험회사 모두 취급 가능
	질병보험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등의 위험(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한다)을 주로 보장하는 보험	
	간병보험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기타제3보험	그 밖에 하부규정에서 정하는 보험	

주 : 해당보험상품의 내용은 법령이 아니라 보험업감독규정 별지 제1호 『보험종목 구분기준』에 의함.

따라서 신용보험¹¹¹⁾, 날씨보험, 법률서비스보험 등을 열거하여 중첩성 논

111) 신용보험이란 여신제공자인 상인 및 그 밖의 자가 그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그들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금전채무(debts)를 미지급함으로써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것에는 부보된 금전채

란이 우려되는 보험상품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소비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규제 영역을 정확히 확정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보험상품에 대한 대체재로, 비보험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만들어진 상품으로 신용보험에 대한 대체재로써 채권자에 의해 만들어진 부채취소계약과의 혼란, 날씨보험과 날씨파생상품간의 상품구분 및 규제 필요성 논란, 서비스급부의 보험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납 또는 할인계획으로서 간주된 상품인 법률서비스계획과의 혼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표VI-3> 보험업법령에 추가 열거가 필요한 보험상품

구 분	해당상품	해당상품 내용	비 고
생명보험	신용 생명보험	신용공여자 또는 상품공급업자가 본업으로 제공한 상품 또는 대출 등 서비스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채무불이행의 원인이 생명보험 담보사고에 한함)	신용파생 및 DCDS와의 혼란방지
손해보험 제3보험	신용 손해보험	신용공여자 또는 상품공급업자가 본업으로 제공한 상품 또는 대출 등 서비스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채무불이행의 원인이 생명보험 담보사고에 한함)	신용파생 및 DCDS와의 혼란방지
	날씨보험	비우호적인(adverse) 날씨에 기인한 금전적 손실 또는 휴업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날씨파생과의 혼란 방지
	법률서비스보험 ¹¹²⁾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률서비스 비용의 상환을 제공하는 보험	보험사고의 구분이 어려워 생손보사 모두 취급

무를 취득 및 처분하는 부대권한 및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금전채무를 징수하는 부대권한을 포함한다. 다만, 보증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보험도 신용보험으로서 담보해서는 안 된다(미국 뉴욕주 보험법 제1113조).

112) 미국은 생명·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보험회사 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에도 허용하고 있는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의 정의와 무관하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추가 열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세제적격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보험상품으로 취급하고 근거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규제가 적용되는 보험상품이다.

<표VI-4> 다른 법률에 의거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상품

구 분	해당상품	해당상품 내용	비 고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상품	세제적격개 인연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축보험계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개인연금보험계약	생·손보사 모두 취급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생·손보사 모두 취급

4. 보험상품 정의관련 보완장치 마련

보험상품 정의와 관련하여 제도적 보완 또는 보충수단으로는 ① 보험상품 정의에 포함되지만 명시적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② 보험상품은 아니거나 명시적 적용제외하였지만 규제주체측면에서 보험감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제한적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법, ③ 보험상품은 아니지만 겸업정책측면에서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보험상품 포괄적 정의에 포함되지만 현재와 같이 보험감독을 받지 않는 유사보험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적용제외대상으로 회원중심의 보험단체, 소규모 공제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서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제 또는 보험단체 등을 열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기능 동일규제 차원에서는 반드시 보험규제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명시적 적용배제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일정규모이상으로 규제 필요성이 있는 우체국보험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공제상품은 감독

일원화가 시급하고 판단된다. 그러나 규제실익이 적은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한 계 또는 소규모 공제와 기업복지플랜 및 서비스계약에 대하여 전면적 보험규제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VI-5> 보험상품 정의에서 명시적 적용제외가 필요한 상품

구 분	해당상품명		해당상품 내용	비 고
유사보험	법을 근거가 있는 공제 기관	불특정 다수 대상사업	생명, 손해 및 제3보험종목	해당법률에서 보험업법 적용배제
		조합원 대상사업	생명, 손해 및 제3보험종목	해당법률에서 보험업법 적용배제 또는 조합원 대상으로 사업범위를 제한
	법을근거가 없는 소형공제기관		생명, 손해 및 제3보험종목	조합원 대상으로 사업범위를 제한하거나 규제실익이 적은 소규모 사업
	국가	우체국 보험	생명보험	해당법률에서 보험업법 적용배제
사회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강제공영보험	일반적으로 보험업법 규율대상이 아님	
일반기업의 복지플랜 (①,③)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복지플랜의 담보내용중 사망보험금 또는 연금지급, 재산손해 보상, 상해 및 질병보상 등	보험담보는 복지플랜금부중 일부이고 1기업내로 제한
기타서비스계약 운영주체 등 (①,③)	의료서비스계약		의료기관 등의 우연한 사고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계약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한 서비스급부의 제공이지만, 본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인정
	Warranty계약		일반기업의 품질 보장차원에서 실시하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수리서비스 제공계약	
	Waiver계약		렌트차량의 손상 및 도난에 대한 구상포기 등 권리포기계약	

둘째,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거나 명시적 적용제외되었지만 제한적 보험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보험상품의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보험규제가 필요한 분야로 캡티브 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유동화회사를 규정하고 있고, 명시적으로는 적용제외되었지만 보험규제가 일부 필요한 분야로 비영리의료법인, 종업원복지기금 등에 대하여 보험감독권자에게 인허가 및 제한적 감독권¹¹³⁾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 캡티브보험회사 등 자가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을 정의하면서 리스크 전가의 개념만 포함하며 리스크 결합의 개념이 빠짐으로서 제외된 리스크 결합의 보험조직에 대한 보험감독권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생명보험계약유동화회사는 보험이라기 보다는 보험계약의 유동화를 하는 것으로 보험은 아니지만 유동화에 대한 보험감독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이다. 예를들면 유동화 대상보험계약의 범위,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제한 등의 법적 보완도 필요하며, 유동화계약의 모집에 대한 자격제한 등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다.

셋째, 보험상품은 아니지만 경영정책측면에서 보험회사의 경영업무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제도적 보충장치 마련에 대한 것이다. 현재 다른 금융업무 중 보험회사 본체경영을 허용한 업무로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함)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가 있다.

경영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업권별로 고유업무를 제외하고는 겸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유 업무라 하더라도 업권간 중첩성 논쟁이 심한 경우 겸업을 허용할 수 있다. 일본을 살펴보면 파생상품과 보험상품간의 중첩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부수업무로 파생상품의 취급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다. 적어도 논란이 되고 있는 날씨파생 및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직접 발행·취급할 수 있도록 추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113) 보험회사에 비하여 완화된 보고 및 공시의무 부과, 거래의 공정기준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표VI-6> 보험상품은 아니지만 일부 보험규제가 필요한 분야

구 분	해당상품	해당상품 내용	비 고
캡티브 보험자	보험상품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이전을 기준으로 보험상품을 정의하였으나, - 캡티브는 리스크이전은 없지만 실질적 계열내 또는 동업자내 자회사 또는 회원을 상대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리스크이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험상품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미국은 캡티브보험사 설립을 보험업법에서 규제
Viatical Settlement	Viatical Settl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내 사망예정 자의 사망보험계약 유동화 또는 - 노령의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유동화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유동화이지 보험은 아니지만 미국은 보험업법에서 규제
비영리의료 법인	의료비용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법 또는 협동조합법인법에 의거, 설립한 법인이 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의료비용 보상, 치과비용 보상 등을 제공 	명시적으로 보험상품에서 제외하지만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음 (미국)
종업원복지 기금	상해,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또는 연금 계약의 구입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해 기업의 복지를 위해 - 직접 또는 수탁자를 통해서 1명 또는 복수의 고용주가 한 개 또는 복수의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설립 또는 유지하고 있는 기금 	

5. 보험회사 투자성 금융상품 취급 확대

보험회사의 투자기능은 보험업의 본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산운용업무차원과 상품구조측면에서 투자실적 배당의 보험상품 성격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며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실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에는 미리 받는 보험료

가 보험금으로 지급되기 전까지의 보유자산을 활용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반영하여 보험료와 보험금이 같도록 하는 수지상등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보유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운용은 보험회사의 보험 본래 업무수행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이런 보험회사 자산 운용업무를 보험업무 수행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구분된 자산운용업무를 투자자금을 모아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집단투자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본다.

보험상품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투자한 후 투자실적을 보험금 또는 환급금 결정에 반영하는 변액보험과 같은 실적배당상품이 있다. 변액보험에는 변액종신 또는 변액연금과 같이 변액하는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 데 변액종신의 경우 실적배당률에 따라 종신보험금이 변동하며, 변액연금의 경우 연금이 변동하는 것이다. 단순히 투자자금의 회수금이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순수 투자목적의 변액보험은 없다. 그럼에도 변액보험을 보험상품으로 보지 않고 투자상품으로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 또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능력에 기초한 투자활동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험회사 투자기능과 관련하여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보험회사의 투자상품 또는 투자업무 취급을 허용하고 보험회사의 보장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증권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투자상품 또는 투자업무 취급 사례는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 겸 영업업무로 투자관리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뉴욕주 보험법 제3222조에 의하여 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회사에 허용한 기금적립협정(funding agreement)업무는 보험계약의 정의와 관계없이 기금적립협정의 체결 또는 교부를 보험업(doing an insurance business)으로 간주하고 있다. 기금적립협정은 보험업이 인가된 사람 또는 그 자회사에는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으며, 보험업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entities) 및 개인에 대해서는 ① 합중국 또는 외국에 설치된 1974년 ERISA 소정의 종업원 퇴직연금 제도에 의거하는 연금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② 내국세법(the Internal Revenue Code) 제501

조 (c)에 의거 과세면제가 되는 단체 또는 유사단체의 활동자금을 적립하기 위해, ③ 연방정부, 주정부, 외국 또는 그러한 정치 하부조직 혹은 그러한 기관의 어떠한 제도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④ 청구권 변제의 정기적 지급을 제공하는 협정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또는 ⑤ 2500만 달러를 넘는 자산을 가지는 단체의 모든 제도에 대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금적립협정을 보험회사에 허용한 이유는 보험회사가 금융서비스 제공자이고 은행 등 다른 금융중개업자와 경쟁하여 금융 및 투자상품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¹¹⁴⁾.

유럽에서도 변액보험이외에도 Capital Redemption¹¹⁵⁾, Capitalisation¹¹⁶⁾, 연금기금관리(pension fund management) 등 투자성상품을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고, 톤틴연금(Tontines)과 같이 과거 국가재정 마련에 이용했던 보험상품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호주의 감채기금증권(sinking fund policy)도 사망 또는 생존과는 상관없지만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다. 즉, 보험상품은 개념적 정의만으로 분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역사적 배경, 사회적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보험상품과 보험회사의 취급업무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자산운용을 통하여 배양된 투자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투자성상품의 범위를 과감히 확대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다. 우연한 보험사고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선진 주요외국의 사례에서 처럼 손해보장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품구조에 상관없이 일반개인들의 자금을

114) State of New York Insurance Department, "Indemnity Agreements Related to the Securitization of Funding Agreements", 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Opinion. May 30, 2000.

115) 자본상환증권(Capital Redemption Policy)은 보험료의 지급과 교환하여 발행되는 자본상환계약이다. 보험료는 현금, 주식, 신탁, 채권, 사기업주식이나 기타 자산과 같은 미등록 증권 등이 될 수 있고 보험증권의 가치와 그것과 함께 평가된 자산을 대응시킨다. 자산의 가치는 시장의 움직임이나 환율에 따라 변동될 것이므로, 자본상환증권의 가치는 매일 변동되지만 보험증권을 현금화하거나 만기 전에 보장가치를 받을 권리는 없다. 자본상환증권은 소유자의 수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체검사나 사망확률의 계산도 필요치 않다.

116) Capitalization이란 복권이 첨부된 장기적립저축으로 보험유사상품이나 최근에는 복권기능 없이 순수 장기적립저축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위탁관리하여 미래의 손해보장 또는 노후자금 등 보험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상품은 보험회사에 허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한계로 사회보험만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노후보장 또는 보험보장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보험회사의 위험보장기능을 활용한 사회보장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자본시장 발달로 2000년 이후 활성화 되고 있는 보험증권화 제도에 대해서도 자본시장을 통한 보험자본 조달기능 및 보험리스크의 자본시장으로의 중개기능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은 선진금융기법으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¹¹⁷⁾. 보험증권화는 보험성격과 증권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표VI-7> 보험증권화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방안

구 분	세분업무	업무내용	대상법령
보험증권화	SPV설립	- 보험증권화를 위한 특별목적자회사의 설립 - 보험증권화 대상 보험리스크 이전시 이전받은 SPV에 대한 재보험감독 여부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필요
	증권발행 등 관리업무 대행	-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보험증권화 관리업무 및 증권발행을 위한 사채 모집업무 등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필요
	보험증권화 대상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대상 자산에 추가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는 보험부채 등	보험업법 또는 자산유동화법률 개정 필요

6. 보증관련 상품 및 업무에 대한 규제 명료화

보증보험은 금융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중첩성 상품 중 하나이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으로 보증업무를 하고 있지만 은행의 경우 신용공여의 한 수단

117) 유지호·최원,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증권화 활용방안 검토」, 『주간보험이슈(WII 제108호)』,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7. 5. 30.

으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기업들도 다른 기업의 지급보증을 하는 사례는 많다. 증권회사도 신용파생상품으로 신용스왑(CDS: credit default swap)¹¹⁸⁾ 등을 취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회사들도 신용면제 유예계약(DCDS: debt cancelation and debt suspension)을 대출계약의 부대계약으로 취급하고 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계약당사자 및 수익자와 계약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표 VI-8> 보증관련 금융상품 내용 비교

구분	사고성격	계약당사자	수익자	계약성격
지급보증	채무불이행	채무자와 은행등	제3의 채권자	타인을 위한 계약
DCDS	사망, 화재 등 보험사고에 따른 대출 채무불이행	채무자와 카드회사	카드 회사	부대계약
CDS	채무불이행, 파산,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사건의 발생	보장매입자 (=채권자)와 보장매도자	채권자	자기를 위한 계약
신용생명·손해보험	사망, 화재 등 보험사고에 따른 채무불이행	채무자와 보험회사	제3의 채권자	타인을 위한 계약
보증보험	채무불이행	채무자와 보험회사	제3의 채권자	타인을 위한 계약
보증보험사의 신용보험	상품매매계약 등의 채무불이행	채권자와 보험회사	채권자	자기를 위한 계약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보면 첫째, 은행등의 지급보증과 보증보험이 기능면에서 동일하므로 계약방법이 보험계약이나 지급보증이나 하는 것과 보증인이

118) 보장매도자가 특정 증권 또는 채권 발행인(채무자)의 파산 등의 신용사건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보장매입자인 채권자에게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신용사건이란 도산, 합병에 따른 신용사건(credit event upon merger), 교차채무불이행, 신용등급하락, 지급불능, 지급거절,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

은행등이나 보험회사이나 하는 것에서만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능적 구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증보험을 보험상품으로 정의하더라도 보증인이 보험회사인 경우로 제한하여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신용파생상품과 신용보험간의 구분은 2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신용생명보험 및 신용손해보험과 CDS는 사고성격, 계약당사자, 수익자 및 계약성격 등이 명확히 구분되나, 보증보험사가 취급하는 신용보험(상업채권에 대한 상업신용보험, 대출 등 채무채권에 대한 재정 신용보험)은 CDS와 유사하다. 따라서, CDS를 보증보험사 취급의 신용보험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신용생명보험 및 신용손해보험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하므로 우연한 보험사고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을 보장하는 CDS는 보험상품 영역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제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용생명보험 및 신용손해보험과 CDS의 구분 필요성은 CDS와 마찬가지로 DCDS가 신용생명보험 및 신용손해보험의 영역을 명시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자 입장에서 신용보험과 DCDS의 유용성은 동일하므로 계약당사자가 다르다고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공제상품이 보험상품이지만 규제측면에서 적용배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주체를 달리 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없는 한 DCDS를 신용보험의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할 명분도 없고 그러한 기능적 정의도 어렵다.

넷째, 신용생명보험, 신용손해보험 및 보증보험사의 신용보험의 구분은 보험상품 내에서의 구분이므로 보험사고의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증관련 금융상품과 보험상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기 위해서는 세부 보험상품의 정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증보험의 정의에서는 보증인이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배제하고,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손해보험은 추가로 법령에 열거함으로써 신용보험의 영역을 분명히 하여 CDS 또는 DCDS와의 불필요한 논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